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91
----------	-------

발의연월일 : 2025. 9. 15.

발 의 자 : 엄태영·윤한홍·서천호
안철수·김상훈·김은혜
김태호·정동만·김소희
진종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영농·영어 정착을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를 동시에 책임지는 취약계층으로, 소득 불안정과 시간 제약으로 인해 초기 자본 투자, 기술 교육 참여, 유통 네트워크 접근 등 농어업 진입에 필수적인 요소에서 일반 농어업인에 비해 큰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농어업 진입 기회가 제한되므로,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을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 ④ (생략)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u>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u> 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⑤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 ----- -----.
<u><신 설></u>	1. <u>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u>
<u><신 설></u>	2. <u>「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u>
<u><신 설></u>	3. <u>「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u>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